

2023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

▶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.

과 명	직 위	성 명	전화번호
친환경농업과	친환경농업팀장	정 인 응	031-8008-5446
	주 무 관	안 한 승	031-8008-5447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 증진 도모

2. 근거법령
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55조
- 경기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9조

3. 지원내용

-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, 친환경농산물 공급(연 48만원 수준)

4. 지원자격 및 요건

- '22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(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)

5. 지원한도

- 임신부 1인당 연 48만원(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부담 20%)

6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 이후
합 계	-	9,600	14,400	19,200
도 비	-	2,304	3,456	4,608
시군비	-	5,376	8,064	10,752
자부담	-	1,920	2,880	3,840

II. 주요 세부추진 내용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
2. 지원 품목 등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·무농약농산물,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,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
 -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
 - 도내에서 생산·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,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은 타도에서 조달하여 공급가능
- *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(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)

3. 지원방식

- 임신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
 - (공급업체 선정) 도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
 - (지원신청) 임신부는 에코이몰(www.ecoemall.com)에 온라인으로 신청, 또는 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·군별로 공지된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·신청, 서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서 에코이몰 관리자 프로그램에 신청내용 입력, 이후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
 - (지원 대상 임신부 선정) 신청 기한 내 신청 임신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
 - (주문 및 배송) 임신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,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신부에게 배송
 - (지급 및 정산) 시·군은 사업확정(고유번호 부여)된 임신부에 대하여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집행 후 시·군에 사후 정산

4. 지원조건

- 예산규모 : 9,600백만원(도비 2,304, 시군비 5,376, 자부담 1,920)
 - 지원형태 : 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부담 20%
- 지원한도 :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, 초과 금액은 자부담
 - 1회 공급 한도금액 : 30,000원 이상 100,000원 이하
 - * 1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, 잔여 금액이 30,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,000원 미만 주문 가능
 - 친환경농산물 주문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% 이상으로 설정
- 지원기간 : 대상자 확정 후 '23. 11. 30일까지'
 - 대상자 확정(고유번호 부여)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
 - * 시군이나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주문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함
 - 시·군은 미 주문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,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후 공급업체에 통보

III. 운영원칙

1. 공급제품 관리

- (공급제품)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, 축산물, 가공식품
- (품목구성) 도내 산 친환경 농산물 50% 이상 사용 원칙,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에 한하여 타 도산으로 공급가능
- (생산지역) 국내산으로 하되, 지역 친환경농산물(로컬푸드) 공급 권장

2. 공급제품 품질관리

-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·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 하되,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
- 공급제품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·포장,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

IV. 공급준비

1. 공급업체 선정

- (선정신청)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경기도 공급업체 모집 공모에 따라 참가 신청서(서식 6)를 제출
 - * 사업신청서,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역량,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, 주문·판매시스템, 생산자 조직과의 연계, 친환경 농식품 안전관리 등
- (선정심의) 서면(50%) 및 현장확인·발표 및 질의·응답평가(50%)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(서식 7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참조)
 - 단, 공모신청 접수 결과 선정업체 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 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,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
 - (심의위원회) 소비자 단체, 유통공사, 행정, 학계 등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
 - (서면평가) 작업장 인증 여부(취급자, GAP, HACCP), 시설·장비 현황, 사업조직 역량, 친환경농식품안전관리,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공급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행정에서 평가
 - (현장평가)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, 발표 및 질의·응답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평가

2. 시행 준비

- (주문시스템) 선정된 공급업체는 사업시행 전까지 자체 쇼핑몰 등록,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
- (포장재 등)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
- (홍보·교육) 시·군 및 공급업체는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 - 필요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,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

V. 공급절차

1. 지원신청 및 접수

- (지원 대상)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에코이몰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*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 제출한 자

*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**출생증명서**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36호)에 따른 **임신·출산확인서** 또는 **산모수첩**
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, 임신·출산 확인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

* 국내 거주 외국인 :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

- 2023년 사업 기간은 **선정일부터 11. 30일까지**
-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·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
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○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

*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

- (지원 신청) **에코이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, 보완적(오프라인)으로 신청서(서식1)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**

- (온라인) 에코이몰(www.ecoemall.com) 중 지원사업 소개 -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→ (회원정보입력) 회원자격검증(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)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,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

- (오프라인) 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·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·출산 여부를 확인

- 해당 시·군·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,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·군·구에서 지원

- (수혜대상 검증)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·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

-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·군·구 보건소에 제공

- 시·군·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등의 수혜 여부를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

- (사업대상자 선정) 사업 신청 기한 내 신청한 자격 검증이 완료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**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해 시·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천**, 사업대상자 추천에서 **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**

- (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)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 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

- (임산부 회원가입)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

-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,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(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)

-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(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)

- (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) 사업 지원 기한은 '23년 11월 30일까지이나, 지원 기한이 도해하기 전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 된 경우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

2.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

【 지원한도 】

- **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**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(고유번호 부여일)로부터 '23년 11월 30일까지 지원

- 배송 횟수는 월 4회(연 16회)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

* 1회 공급 한도금액: 30,000원 이상 100,000원 이하

* 다만,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·쌀 등은 3만원 이하 주문가능

-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(배송),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

【 농산물 주문 및 결제 】

○ (회원 가입)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가입 및 로그인

-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,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

○ (결제)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*을 사용하여 결제 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

* 무통장입금, 신용카드, 전자지불, 휴대폰 소액결제 등

-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

【 임산부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】

○ (제작기준)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

-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,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장려, 필요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

○ (농산물 확보) 농산물 원물은 도내 친환경 단지,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

○ (가공)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,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·위생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(선별, 세척, 1차 가공 등) 실시

-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,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

○ (포장) 공급업체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,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

-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,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,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

○ (안전관리)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

【 배송 】

○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

-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,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.

-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

3. 품질관리

○ 공급업체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·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

○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「별표1」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

-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(배송착오, 변질 등)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,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

- 특히,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, 즉시,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도 및 시·군에 보고(발생일 후 5일 이내)

4. 홍보 및 교육

-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(지자체 홈페이지, 맘카페 등)과 오프라인(지역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, 현수막 게시,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)을 통해 홍보
-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 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

5. 제재 및 보고

-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,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,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**공급계약을 중단**하거나 **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**
 - *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
-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및 보고

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

이 준수사항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,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1.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, 선별·세척·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(위탁사업장 포함)에서 이루어져야 함
2.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
3.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, 점검기록과 제품 입·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
4. 공급업체는 잔류물질(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) 검사 대상, 검사 주기,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
5.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
6.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, 해당 제품을 회수·폐기하는 한편, 임산부에게 교환·환불·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7.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민원 내용·발생 원인·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
8.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, 현장점검 등에 적극협조 해야 함

보조금 정산서

(공급업체 → 시군구 제출용)

□ 사업명: '23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

□ 공급기간: 2023. . . ~ 2023. . .

□ 공급인원

시군	확정인원(명)	공급인원(명)	미공급인원(명)
합계			

□ 공급실적

(공급연도)

(단위: 건)

시군	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1월	12월
합계												

□ 사업비 집행실적

(단위: 천원)

시군	사업비				집행액				집행잔액			
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합계												

□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

구분	회원 미가입	미주문	영양플러스사업 전환	기타
인원(명)				
금액(천원)				

위와 같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보조사업자 주소:

단체명:

사업자번호:

대표이사:

(직인)

○○시장·군수 귀하

서식 제6호

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

신청자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		
	이름 (대표자명)	대표자 생년월일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
	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	참여농가 (인증농가)	명	재배면적 (인증면적)	ha	ha
	사업장 주소					
	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					
	전화번호	사무실: (휴대폰:)				
	공급업체 형태	농업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기타		주 재배품목 및 유통품목		
	친환경농산물 매출액	(2021년)	천원			
	(2022년)	천원				
<p>2023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,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(서명 또는 인)</p> <p>경기도지사 귀하</p>						
<p>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(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·이용 동의 사항)</p>						
<p>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: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</p> <p>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</p> <p>3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</p> <p>4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</p> <p>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</p> <p>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,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.</p>						

서식 제7호

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(안)

1. 서류심사

평가요소	평가항목	평가지표	점수
	필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○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급업체 쇼핑몰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등록하여 주문, 결제,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○ 품질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냉박스, 냉장직배, 저온배송 등의 운영으로 입증 	
	전담인력 확보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클레임 등 A/S 전담 대응 인력 확보 여부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명 이상 확보: 5점 - 3명~4명 확보: 3점 - 1명~2명 확보: 2점 - 미확보: 0점 	
시설장비 현황 (20)	작업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: 5점 -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,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: 2점 ○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(1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AP, HACCP을 둘 다 받은 경우: 10점 - GAP, HACCP 중 한 가지만 받은 경우: 5점 - 모두 지정받지 않음: 0점 	
	공급능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㎡ 이상인 경우: 5점 - 50㎡ 이상 100㎡ 미만인 경우: 4점 - 20㎡ 이상 50㎡ 미만인 경우: 3점 - 20㎡ 미만인 경우: 2점 -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: 0점 ○ 꾸러미 전담 작업자 확보 여부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명 이상 확보: 5점 - 3명~4명 확보: 4점 - 1명~2명 확보: 3점 -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: 0점 	
사업조직 역량 (30)	참여 유통조직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내 친환경농업 단지(작목반 포함)가 참여하고 있는가?(1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급계약 체결(30개 이상): 15점 - 공급계약 체결(25개 이상): 12점 - 공급계약 체결(20개 이상): 10점 - 공급계약 체결(10개 이상): 5점 - 참여하고 있지 않음: 0점 	
	친환경농산물 유통실적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(1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150억원 이상: 15점 - 100억원 이상 ~ 150억원 미만: 12점 - 5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: 8점 - 3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: 4점 - 30억원 미만: 2점 	

평가요소	평가항목	평가지표	점수
관리실태 (30)	저온위생관리 (10)	○ 저온 물류집배송장, 냉장 창고, 냉장배송 차량 등 콜드체인 확보 여부(10점) - 전체 유통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: 5점 - 일부 단계에서 콜드체인 확보: 3점 - 해당 없음: 0점	
	불만사항·사고처리 (10)	○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·처리 체계 구축(5점) -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별도 운영: 5점 - 매뉴얼은 있으나 구체성 결여: 3점 - 대응매뉴얼 없음: 0점 ○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(5점) - 보험 가입: 5점 - 보험 미가입: 0점	
	안전성관리 (10)	○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'품질관리계획' 수립 여부(10점) - 잔류물질 검사 대상, 검사 주기,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'품질관리계획' 수립: 10점 - 품질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성 결여: 5점 - 품질관리계획 미수립: 0점	
품목 다양화 (15)	품목구성 (10)	○ 현재 취급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(10점) - 200개 이상: 5점 - 150개 이상~200개 미만: 4점 - 100개 이상~150개 미만: 3점 - 70개 이상~100개 미만: 2점 - 50개 이상~70개 미만: 1점	
	상품조달체계 (5)	○ 원활한 상품 조달 체계 구축 여부(5점) - 도 내에서 상품 수급이 곤란할 경우, 타 시·도로부터의 상품 수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: 5점 - 해당 시·도 내 상품 수급만 가능: 0점	
가점		○ 소비자 대상 친환경교육, 홍보 등 실적: +5점 - 연 10회 이상: +5점 - 연 7회 이상~10회 미만: +4점 - 연 5회 이상~7회 미만: +3점 - 연 3회 이상~5회 미만: +2점 - 연 1회 이상~3회 미만: +1점	
제한사항		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	

2.현장심사

평가요소	배점	평가지표	점수
사업 이해도 및 시설·장비 적정성 (30)	10	○ 사업 목적과 공급업체의 역할 이해 정도 ○ 사업 전담 관리자 지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	
	10	○ 상품 제작·공급 능력 1. 임산부 꾸러미 전담 작업장 규모 확인 2. 임산부 꾸러미 전담인력 확보 여부 확인	
	10	○ 온라인 유통·판매시스템 구축 여부 및 역량 1. 공급업체 소평몰과 연계 할 수 있는 주문시스템 구축 2. 고도화된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여부 3. 자체 온라인 주문시스템 활성화 정도(주문량, 품목수 등)	
공급업체 역량 (70)	20	○ 공급품목 수급계획 1. 임산부 선호 품목 및 공통품목 상시 조달 가능성 2. 구체적인 품목 수급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3. 도내 친환경농업 단지 참여 여부 및 향후 협력 계획	
	20	○ 콜드체인시스템,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시설 ○ 창고 및 작업장은 청결하며, 방충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	
	20	○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이력 여부 ○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한 '품질관리계획' 수립·운영 여부 1. 잔류물질 검사대상, 검사주기,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'품질관리계획' 수립 여부 및 유통물량 대비 적정성 2.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매뉴얼 구비 여부	
	10	○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1. 민원 처리 담당자, 대응 매뉴얼 구비 2. 매뉴얼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 여부	

※ 5단계 평가: 매우 우수(20/10), 우수(16/8), 보통(12/6), 미흡(8/4), 매우 미흡(4/2)

【 심의위원 의견 】

소속

직위

이름

(서명)